

특수구조대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특수구조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제6조제1항각호"를 "제6조제1항 각 호"로, "법 제5조제1항제2호"를 "영 제5조제1항제2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"특정소방대상물"이란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물을 말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"탐지·오염제독반"을 "탐지·오염제독(除毒)반"으로 한다.

제6조제1호 중 "탐지·채취·이송·제독"을 "탐지·채취·이송·제독(除毒)"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"「구조장비 보유기준」 별표 1"을 "「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3"으로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"소방본부장은 「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」 제6조"를 "소방본부장은 「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」 제6조"로 한다.

제16조 중 "2019년 1월 1일"을 "2025년 7월 1일"로, "12월 31일"을 "6월 30일"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“특수구조대”란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구조대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방대상물, 지역 특성, 재난발생 유형 및 빈도에 따른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 및 출동장비를 갖추고 소방서 등에 설치하는 구조대를 말한다. 2. (생략) 3. “특정소방대상물”이란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대상물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----- 제6조제1항 각 호----- ----- 영 제5조제1항제2호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5조(편성) ① 특수구조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편성·운영한다. 1. 화학구조대 : 지휘, 구조반, 탐지·오염제독반, 지원반 등 2. 3. (생략)	제5조(편성) ① ----- -----. 1. ----- 탐지·오염제독(除毒)반--- 2. 3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생략)

제6조(임무) 특수구조대는 소방대
상물, 지역특성, 재난발생 유형
및 빈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
임무를 수행한다.

1. 화재방사고 발생 시 초기단
계에서의 오염 확산 방지 및
의심물질 탐지·채취·이송·
제독 등

2. ~ 5. (생략)

제9조(출동장비) ① 특수구조대가
갖추어야하는 장비는 「구조장
비 보유기준」 별표 1에 따라
화학·수난·산악사고 등 활동
에 필요한 구조장비를 갖추어야
한다.

② (생략)

제11조(직무교육) ①·② (생략)

③ 시·도 소방본부장은 「구조
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」 제
6조에 따른 위탁교육 대상자 선
발 시 화재방·수난·산악관련
교육과정에 특수구조대원을 우
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.

제16조(재검토기한) 소방청장은
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
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임무) -----

-----.

1. -----

----- 탐지·채취·이송·
제독(除毒) -----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출동장비) ① -----
----- 「소방장
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
3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직무교육) ①·② (현행과
같음)

③ ----- 소방본부장은 「구조
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」
제6조-----

-----.

제16조(재검토기한) -----

령에 대하여 <u>2019년 1월 1일</u> 기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<u>12월 31일</u>까지를 말한 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----- <u>2025년 7월 1일</u> --- ----- ----- <u>6월 30일</u>----- ----- -----.
---	---

특수구조대 운영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특수구조대의 편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특수구조대”란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조대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방대상물, 지역 특성, 재난발생 유형 및 빈도에 따른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 및 출동장비를 갖추고 소방서 등에 설치하는 구조대를 말한다.
2. “소방대상물”이란 「소방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상물을 말한다.
3. “특정소방대상물”이란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물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특수구조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며, 세부사항은 시·도별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다.

제4조(설치) 시·도지사는 화학·수난·산악사고 등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·구급 등을 위하여 소방서 등에 특수구조대를 설치한다.

제5조(편성) ① 특수구조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편성·운영한다.

1. 화학구조대 : 지휘, 구조반, 탐지·오염제독(除毒)반, 지원반 등
2. 수난구조대 : 지휘, 운항반(항해, 기관), 구조반 등

3. 산악구조대 : 지휘, 구조반, 구조견 운영반 등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편성에도 불구하고,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을 통합하거나, 세분화 할 수 있다.

③ 시·도지사는 특수구조대의 1개 팀 편성 시 「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편성·운영하여야 하며, 특수구조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.

제6조(임무) 특수구조대는 소방대상물, 지역특성, 재난발생 유형 및 빈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화생방사고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 확산 방지 및 의심물질 탐지·채취·이송·제독(除毒) 등
2. 화학·수난·산악사고 등 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·구급 등
3. 중요행사장 전진배치 등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한 지원
4.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순찰 및 점검
5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지정하는 임무

제7조(출동구역) 특수구조대의 출동구역은 시·도별로 정하되, 응원 요청 시 타 시·도에 지원 출동할 수 있다.

제8조(대응원칙) 화학·수난·산악사고 등 현장에 도착한 특수구조대는 「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른 현장지휘관의 지휘를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.

제9조(출동장비) ① 특수구조대가 갖추어야하는 장비는 「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3에 따라 화학·수난·산악사고 등 활동에 필요한 구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·도 소방본부장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

필요한 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.

제10조(대원의 안전관리)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와 감염방지에 대해서는 법 제23조와 영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.

제11조(직무교육) ① 시·도 소방본부장은 특수구조대의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연간 직무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직무교육훈련 계획에는 「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」 제14조제1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화생방 사고대응 등 화생방사고에 대비한 화생방구조훈련
2. 급류사고대응, 비상탈출훈련(항해사, 기관사 년 1회 이상), 항공구조훈련, 선박 전복사고대응(항해사, 기관사 년 1회 이상) 등 수난사고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
3. 핸들러 양성훈련, 드론활용 인명수색훈련, 로프활용 구조기법 등 산악사고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
4. 화생방·수난·산악사고 등 구조·구급 장비의 조작 및 유지관리
5. 특수재난 및 화생방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화학·수난·산악사고 등 구조·구급 활동에 필요한 사항

③ 시·도 소방본부장은 「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」 제6조에 따른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시 화생방·수난·산악관련 교육과정에 특수구조대원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.

제12조(긴급구조 예방활동) 특수구조대는 긴급구조를 위한 출동장애위험시설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약요인에 대해 사전·예방 점검 등 중요 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,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 합동점검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긴급구조 대비훈련) ① 특수구조대는 화생방·수난·산악 등 사고

발생에 대비하여 출동장애 위험시설 및 특수소방대상물에 대한 기능숙달 훈련, 현지적응훈련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훈련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1. 화생방·수난·산악 등 사고 유형별 특성 이해
2. 장비숙달
3. 현장대응요령 숙지
4. 출동장애 위험시설
5.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방안 등

③ 시·도 소방본부장은 관할구역 내 유관기관 간 긴급구조 훈련 시 특수구조대 임무 시나리오 반영, 인력·장비 지원 등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4조(대외협력체계) ① 특수구조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시 관계기관 전담조직과 수난·산악·화생방 사고 대응방안 공동연구 등 긴급구조 대응능력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5조(지도점검) 소방청장은 시·도 특수구조대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.

제16조(재검토기한) 소방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)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